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광주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5. ~ 12.(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나. 사업비 : 70억원

다. 지원규모 : 약 7,600여개소 / 월 임대료 3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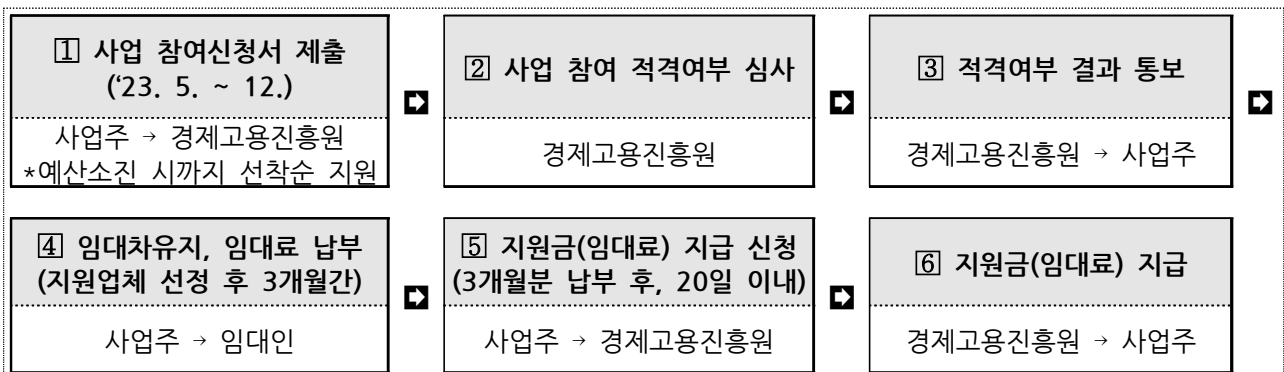
라. 지원대상 : 사업장을 임차(가족, 배우자간 등 제외)하여 사업공고일 기준 실제 6개월 이상 2년 미만 영업 중이고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업종 [참고 1-1, 1-2] 참조

마. 지원내용 :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월 최대 30만원, 3개월 지원)

바. 지원방법 :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업체 승인 및 지원금 지급(사후지급)

사. 추진절차 :



2 세부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월 임대료 최대 30만원, 3개월 지원(최대 90만원), 약 7,600여개소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① ~ ④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 ①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영업 중인 업체
- ②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업체
- ③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 ④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

- ① (영업기간)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2021. 5. 2. ~ 2022. 11. 2. 범위 내
- ② (연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참고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 ③ (광주소재)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소재
- ④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운수·건설·광업은 10인 미만(사업공고일 기준)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사업장 2개까지 지원 가능

○ 제외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등(참고 1-1, 1-2)

○ 제외대상 :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등

< 지원제외대상 >

※ [참고 1-1, 1-2] 지원제외업종 참고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사업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또는 투기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명의로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재난지원금 제외) 수혜업체 등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산정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 판단기준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지원범위

- 월 임대료 최대 30만원 x 3개월
- 지원조건
 -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전기세, 청소비 등)은 지원 제외
 - 사업 신청일(선정 시) ~ 3개월(2023. 12. 31.한) 발생분 임차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기간이 2023. 12. 31. 내 유효한 경우

나. 지원대상 선정

- 신청 후 10일 내외 선정여부 통보(개별 유선 연락 또는 문자 통보)

다. 지원금 지급

- 지원업체가 임대료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
-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 신청일 ~ 3개월(2023. 12. 31.한) 발생분 임대료 지원
- 사업주는 3개월 이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지원금 일괄지급

- 임대료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20일 이내

- 임대료 납입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인정)

- 지원 기간 내 중도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

- 단, 사업신청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영업장에 한하여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예시) 사업신청일 '23.5.4자, 폐업일 '23.6.7자

→ 1개월분(5.4~6.3) 지원금 30만원 + 일할계산분(6.4~6.6) 지원금 3만원

- 휴·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필수

- 최대 지원기간 3개월 중 일할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 불가

- 1개월 영업 후 휴·폐업 시, 잔여 지원기간 2개월은 소멸

- 지원기간 내 중도 휴·폐업 후 재영업 시작 시,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여부 재승인 받아야함.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 사업기간 중 월 임대료가 상향된 경우 최초 계약금액(임대료) 기준으로 지원하며, 임대료가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2개 사업장만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가. 신청기간 : 2023. 5. 3. ~ 예산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https://www.gbizinfo.or.kr>) 홈페이지 지원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www.gbizinfo.or.kr)에서 공고문 확인 → 공고문 내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파일 제출



다. 신청문의 : 062-960-2631(영세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 담당)

라.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발급처
①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 1, 2]		본 인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④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기소
⑤	상시 근로자	상근로자 O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확인	상근로자 X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⑥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⑦	매출액 증빙	·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사업자)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2년간) ·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년도 2년간)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2년간)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⑧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서식 3]	본 인	
⑨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협약서 [서식 4]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⑪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동의서 [서식 5] 및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자 모두>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승인업체		발급처
①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식 6] - 임차인 통장사본,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 현금지급 인정 불가	본 인	
②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③ (지원기간 내 휴·폐업 시) 휴(폐)업 사실증명원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이름은 전체 공개)

4 (승인업체 대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가. (승인업체 대상) 지원금 신청시기

- 승인 통보 받은 후 3개월 임대료 납입 → 온라인 신청(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20일 이내)

나. 지급시기 : 3개월분 임대료 납입한 후 익월

구 분	지급일정(예시)			비고
	6·7·8월분	7·8·9월분	9·10·11월분	
임대료 납입 기간	6·7·8월분	7·8·9월분	9·10·11월분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후 지급 · 기관 내부 일정상 조정 가능
지급시기	9월	10월	12월	

※ 사업기간 중 월 임대료가 상향된 경우 최초 계약금액(임대료) 기준으로 지원하며, 임대료가 감액된 경우는 변경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원

5 참고사항

가.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허위 판명 즉시 선정을 취소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5 붙임

- 서식 1)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앞, 뒷면)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서식 3)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 서식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서식 5)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위임동의서
- 서식 6) (승인업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참고 1-1) 지원제외 업종
- 참고 1-2) 지원제외 업종 세부분류
- 참고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참고 3) 소상공인 확인 기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뒷면)

1. 임차사업장 외부 사진(간판, 출입문, 외벽 등) ※ 별지 활용 가능(최소 2장)

2. 임차사업장 내부 사진(전면, 측면 등) ※ 별지 활용 가능(최소 2장)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 광주광역시,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	·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자정보,	5년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제공 문자알림	임대차 계약현황, 고용인력 정보, 건강보험 납부이력 등	2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기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사업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개인정보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광주광역시,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광역시,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자정보, 임대차 계약현황, 고용인력 정보, 건강보험 납부이력 등	· 사업신청이력 등 관리	5년
			· 소상공인 정책홍보, 실적보고 등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 제공 문자알림	2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사업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대표자 : _____ (서명/인)

광주광역시 ·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귀하

서식 5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위임동의서

공동대표 위임동의서

① 권한을 위임하는 자 정보

업체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핸드폰)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② 권한을 위임받는 자(공동대표)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주소			

③ 위임내용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과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관련 업무	○ 위임하는 자 :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 위임받는 자 : 신청 및 위임에 관한 모든 정보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에 표시)

2023년 월 일

위임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공동대표자1 : _____ (서명 또는 인)

공동대표자2 : _____ (서명 또는 인)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뒷자리 마스킹 처리),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참고 1-1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외대상 업종

중분류	표준산업분류	업종
기타제품제조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출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6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65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중분류	표준산업분류	업 종
		<p>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p> <p>*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p> <p>-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p> <p>-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p>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업	731	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p>보건업</p> <p>*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p> <p>*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p> <p>*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p>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1-2

지원제외 업종 세부분류

분류 번호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지원 업종	분류 번호	86. 보건업(지원제외 업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	병원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1	종합 병원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6102	일반 병원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6103	치과 병원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4	한방 병원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5	요양 병원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	의원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1	일반 의원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2	치과 의원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3	한의원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69	기타 보건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690	기타 보건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6901	앰블런스 서비스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86902	유사 의료업(침술원, 척추지압요법치료 등)		

분류 번호	64. 금융업(지원 제외 업종)	분류 번호	65. 보험 및 연금업(지원 제외 업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51	보험업
6411	중앙은행	6511	생명 보험업
64110	중앙은행	65110	생명 보험업
6412	일반은행	6512	손해 및 보증 보험업
64121	국내은행	65121	손해 보험업
64122	외국은행	65122	보증 보험업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513	사회보장 보험업
64131	신용조합	65131	건강 보험업
64132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42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	재 보험업
642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0	재 보험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00	재 보험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653	연금 및 공제업
649	기타 금융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491	여신금융업	65301	개인 공제업
64911	금융리스업	65302	사업 공제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5303	연금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499	그 외 기타 금융업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64991	기금 운영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4992	지주회사	68222	부동산 투자자문업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68223	부동산 감정평가업

분류 번호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지원 제외 업종)	분류 번호	71. 전문 서비스업 (지원 제외 업종)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1	금융시장 관리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71101	변호사업
66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71102	변리사업
66121	증권 중개업	71103	법무사업
66122	선물 중개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9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712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71201	공인회계사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202	세무사업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66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 사정업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분류 번호	68. 부동산업 (지원제외 업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21	부동산 관리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참고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3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연평균매출액 관련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 연평균매출액 산정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② 업력 12개월 이상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④ 업력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 기준	①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확인기준 ”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 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23.5.26 신청할 경우, 2022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 2021년 11월 2일, 제출기간 : 2022년 1월 ~ 12월 직원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022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22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22년 5월~12월) 2022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금 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2. 11. 20	'23. 5. 10	(직전 사업연도) '21.1월~'21.12월
예시2	'22. 2. 5		(최근 12개월) '21.2월~'22.3월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 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登記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 (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소상공인 확인 예외 인정 기준

□ 소상공인 여부 적용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으로 할 수 있다.

(예시) 2018년 소상공인 기준 해당 ,2019년 소상공인 기준 초과

☞ 2020년 3월말 이전 대출신청 시 소상공인으로 인정
(소상공인 인정기간 : 2019.04.01. ~ 2020.03.3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연평균매출액 확인 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연평균매출액 산정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시) 업종 음식업, 2020년 4월 대출신청

2017년 연매출액 8억원, 2018년 연매출액 9억원, 2019년 연매출액 11억원

☞ 17~19년 3년간 평균매출액 934백만원으로 음식업 소기업 기준(10억원) 이내 이므로 소기업으로 인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